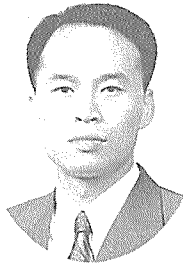


현행 석유류 관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장 용 호
< SK 업무팀 과장 >

1. 관세의 기본적 기능/원칙과 현행 국내 석유류 관세제도

최근 국내 석유산업 전반에 걸친 개방화, 자유화의 진전 및 국제 교역에 있어서 WTO체제가 정착되면서, 그 어느때보다도 국내 석유류 관세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국가주도의 경제성장 정책하에서, 우리나라의 관세정책은 재정수입 확보, 물가정책 등이 중요한 정책의사결정 요인으로 작용하여, 관세제도의 기본적인 기능/원칙은 상당폭 제 2선으로 물러나 있어야만 하였다. 그러나,

이제 석유류에 있어서도 국제적 경쟁의 심화 및 국가교역량의 확대 등 제반 환경변화를 고려해 볼 때, 관세부과 본래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세계 주요선진국이 운영중인 관세부과의 기본적인 기능/원칙은, 무엇보다도 동일한 제품의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간의 격차를 국경에서 해소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다수 나라의 관세구조는 국내에서 수입대체제품이 생산되는 완제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반면 국내에서 생산물량이 없

거나 그 생산량이 현저히 적은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석유류 관세제도를 보게 되면, 제반사정으로 인하여 이러한 기본적인 기능/원칙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국내 생산이 전무한 원자재-원유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국내 생산제품과 경쟁하게 되는 석유수입제품의 관세율과 동일하다든지, 나프타, LPG와 같이 수입완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국내 생산제품보다 오히려 저율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석유류 관세제도가 본래의 기능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사유는, 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관세정책이 재정수입의 확보 또는 관세부과의 물가영향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시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물론, 관세를 통한 재정수입의 확보 또한 관세제도의 무시할 수 없는 기능이다. 그러나, 재정수입의 관세에 대한 의존도는 경제성장과 함께 점차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임을 감안할 때, 최근 97년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관세수입의 비중(약 10%)은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표1, 2 참조)

특히, 관세수입중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5%를 점하고 있으며, 이중 대표적인 원재료인 원유 1품목이 1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원재료 관세의존도가 얼마나 높은 것임을 실감케 해준다.(표3

〈표1〉 세목별(내국세, 관세) 세수비중('97)

(단위:억원)

	내국세		관세		합계	
		%		%		%
세수	550,016	90.5	57,976	9.5	609,092	100.0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99, 3.10.)

** '98년은 외환위기로 인한 특수상황이므로 검토대상에서 제외.

〈표2〉 경제발전 정도에 따른 관세비중

(단위:%)

GDP/人(\$)	15,000\$ 이상	5,000~15,000\$	1,500~5,000\$	1,500\$ 미만
관세비중	0.91	6.71	10.33	19.92

*「UR타결에 따른 에너지자원부문의 영향 및 대처방안」, 박주현, KEEL, 1995.

〈표3〉 품목별 관세수입 비중('98)

(단위:억원, %)

	소비재(A)	원자재(B)				자본재(C)	총계(A+B+C)
		원유	석유제품	기타	소계		
관세수입	13,061	7,292	1,585	21,997	30,874	24,182	68,117
비중	19.2	10.7	2.3	32.3	45.3	35.5	100.0

* 관세 총납부기준(면세, 환급진입)

참조)

이에, 상기에서 거론한 관세제도의 기본적인 기능/원칙의 틀위에서, 현재 국내 석유류 관세제도상에 시급히 개선 또는 개편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해볼까 한다

2. 국내 석유류관세제도의 개선 필요 사항

① 원유/석유제품간 관세차등화 필요

주요선진국들은 Energy Security(수급안정성) 확보 및 자국내 생산석유제품의 경쟁력 보안을 위하여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차등관세를 시행하

고 있다. 즉, 원유 수입시에는 무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석유제품 수입시에는 원유대비 최고 11배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표4 참조)

우리나라의 관세율체계를 보면 83~87년간에는 휘발유, 등유, 아스팔트 등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10%의 기본관세가 부과되었으며, 원유는 원자재로서 5%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이후 국내 석유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생산공급 능력의 부족으로 많은 양의 석유제품의 수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입 석유제품에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경우 국내 물가 및 산업발전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석유제품의 관세율을 5%로 하향조정하였다. 원유의 경우, 석유제품 관세율의 하향조정에 따라, 당연히 무세 또는 저율관세로 조정되었어야 하나, 재정수입 등을 고려하여 원유관세의 하향조정은 배제되었던 것이다. 이에, 현재에도 원유와 석유제품은 동일한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석유류 관세율체계를 보유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석유산업은 국내 생산능력 및 기술력 증대로 석유제품수입보다 수출규모가 큰 석유제품 순수출국으로서, 국제시장에서 외국의 석유제품과 경쟁하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표5 참조) 그런데, 국내생산 석유제품이 원유/석유제품 차등관세를 시행하고 있는 타국에 수출될 경우, 당연히 당해국의 생산제품(원유에 대한 저율관세 납부)보다 고율의 제품관세가 부과되어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없게 된다. 반면, 타국의 석유제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될 경우, 그들은 관세에 있어서는 국내 생산제품과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받아 경쟁력에서 전혀 차이를 갖지 않게 된다. 결국, 관세율체계의 차이에 의해 국내 석유산업은 타국과의 경쟁력에서 상당한 차이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석유류 관세율체계도 공정한 국제경쟁을 위하여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맞게 원유/제품간의 차등화가 필요하다

한편, 국내 석유산업에 대한 외국

〈표 4〉 주요 외국의 원유/석유제품 관세율 현황

구분	미국	일본	E U	중국	대만
원 유	5.25 ¢/B (API 25° 미만) 10.5 ¢/B (API 25° 이상)	무세 (215 ¥/kl)	무세	8% (1.5%)	2.5%
휘발유	52.5 ¢/B	1,830 ¥/kl (1,400 ¥/kl)	5.2%	14% (9%)	15% (12.5%)
등 유	5.25 ¢/B (API 25° 미만) 10.5 ¢/B (API 25° 이상)	1,760 ¥/kl (570 ¥/kl)	5.2%	14% (9%)	15% (12.5%)
경 유	52.5 ¢/B	1,640 ¥/kl (1,270 ¥/kl)	3.8%	11% (6%)	5%
중 유	5.25 ¢/B (API 25° 이상) 10.5 ¢/B (API 25° 이상)	390 ¥/kl (2,400 ¥/kl)	N.A.	20% (12%)	15% (12.5%)

* 괄호안은 실행세율임

〈표 5〉 우리나라의 석유제품 수출입추이

(단위: 천B/D)

구분	'83	'87	'90	'93	'97	'98
수입(A)	59	132	277	475	521	491
수출(B)	45	92	74	285	637	813
차이(A-B)	14	40	203	190	-110	-322

〈표 6〉 '99년 상반기 생산/수입나프타 관세율

	수입나프타(A)	생산나프타(B)	차 이(B-A)
관세율	잠정관세 1%	원유할당관세 2%	+1%

〈표 7〉 '99년 상반기 생산/수입LPG 관세율

	수입LPG(A)	생산LPG(B)	차 이(B-A)
관세율	할당관세 1.5%	원유기본관세 5%	+3.5%

인의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원유/석유제품간에 차등관세가 필요하다. 현재 외국인 투자유치는 수출증대와 함께 우리나라 경제회복을 위한 절대적인 과제이다. 석유산업에 대한 대

외개방이 이뤄진 현 상황에서, 외국기업의 국내 정제업에 대한 지분투자 등 대규모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는 원유와 제품간 차등관세의 시행이 시급히 필요하다. 인도의 경우,

최근 자국내 정제업에 대한 외자유치를 위하여 수입석유제품에 대하여 30%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그 어느때보다도 국내 석유정제업에 대한 외자유치가 필요하고 또한 동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등의 정책으로서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② 나프타, LPG등의 관세제도 형평성 제고

정부는 우리나라 석유화학제품의 국제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그동안 석유화학제품의 기초원자재인 나프타에 대하여 저율관세를 부과하여 왔다. 즉, 석유화학사의 나프타 수입전량에 대하여 잠정세율 1%를 적용하여 왔다. 이와 함께, 국내 정유사가 원유로부터 생산하여 석유화학사에 공급하는 생산나프타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1%를 적용하여 최소한의 형평성은 유지하여 왔다. 즉, 국내 생산품 우대는 아니더라도 수입제품과 동일세율을 적용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99년 상반기 현재 수입나프타 및 국내 생산나프타에 부과되고 있는 관세율은 지금까지의 형평성 원칙이 무시된 채 생산나프타에 고율관세가 부과되고 있다.(표6 참조) 이러한 관세정책은 원유로부터 저가생산이 가능한 국내 나프타생산을 위축시키는 반면, 해외로부터 고가 완제품

수입을 촉진하게 한다. 이러한 관세정책은 관세의 기본적인 기능에도 배치(역관세문제 발생)되는 것이며, 생산제품과 수입제품간의 최소한의 형평성도 유지시켜 주지 못하는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 관세정책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악화를 불필요하게 초래한다. 왜냐하면, 국내 석유화학사는 수입나프타에 대한 잠정관세 1%를 향유하기 위하여, 소로나프타의 완제품수입을 적극 추진한다. 반면, 국내 정유사는 운영 Mode의 변경을 통해 나프타생산을 감축시키거나, 잉여생산나프타를 저가에 수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석유수급의 불균형 및 동 일유종의 수출입이 동시에 발생함으로써, 소중한 외화손실이 발생하여 무역수지악화가 초래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나프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입 LPG와 국내 생산 LPG에도 동일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현재, 수입하는 LPG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1.5%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원유로부터 생산하는 LPG는 원유에 부과되는 기본관세 5%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표7 참조) 특히, 최근 원유가격의 급등 및 LPG국제가격(CP)의 상대적 저위에 따라, 생산 LPG와 수입 LPG에 부과되는 관세부담 차이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올해부터 실시된 LPG 국제가연동제는 수입 LPG가격을 기준으로 국내 LPG가격을 산정토록 하고

있어, 원유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산 LPG Cost상승분은 국내가격에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어, 현재 정유사는 생산 LPG의 세부담 가중 및 Cost미반영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생산제품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수입완제품 대비 생산제품에 저율관세를 부과하지는 못하더라도, 오히려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신중히 재고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이러한 관세정책은 당해제품 수급구조의 왜곡, 국제수지 악화 등 여러가지 파생문제도 발생시킨다. 이에, 생산 및 수입나프타/LPG간의 관세율 형평성제고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3. 맺음말

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석유산업의 개방화, 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진척되면서, 석유류에 대한 관세제도도 관세의 기본적 기능/원칙에 충실해야 할 뿐만아니라,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현재 시급한 개선 과제로서 원유 및 석유제품간의 차등관세의 실시 및 나프타, LPG 관세제도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이제 이러한 과제들의 구체적인 개선 추진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원유 및 석유제품간 차등관세의 구체적 추진방향을 살펴보게 되면, 원유관세율을 현행대비 인하하는 방법과 제품관세율을 인상하는 방법

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성장에 따라 재정수입의 관세의존도는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임을 감안할 때, 원자재인 원유에 대한 점차적인 관세율 인하 또는 무세화가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원유의 세수입이 총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 또는 무세화는 관세수입을 크게 감소시켜 내국세의 징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원유에 대한 관세율 인하는 현시점에서는 우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유 및 석유제품간의 차등관세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품관세율을 일정비율로 인상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나프타, LPG의 경우, 현행 수입제품의 관세율을 생산제품과 동일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생산제품 관세율을 수입제품관세율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나프타의 경우, 석유화학공업의 원자재로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수입나프타의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다소 우리가 따를 수 있으므로, 생산나프타의 관세율을 수입나프타와 동일하게 인하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LPG의 경우에도, 수입 LPG의 관세율을 인상시킬 경우 국내 경쟁제품인 수입 LNG와의 또다른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므로, 역시 생산 LPG의 관세율을 인하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